

제354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9월18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로봇기본법안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5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7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등록기간 경과 REC 등록에 관한 청원
- 124. 미세먼지 이슈화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오염방지업무의 용역근로자 및 시설운영 개선에 관한 청원
- 1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개정에 관한 청원
- 126. 초고압 송전선로(765kV, 345kV) 경과지 주민재산 및 건강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청원
- 127.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박정 · 김종민 · 인재근 · 위성곤 · 소병훈 · 정재호 · 노응래 · 황주홍 · 김종희 · 이종걸 · 김철민 · 심재권 · 송옥주 · 박주민 의원 발의) ..... 11
-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성일종 · 정태옥 · 최연혜 · 곽대훈 · 윤한홍 · 이만희 · 윤영석 · 정갑윤 · 염동열 의원 발의) ..... 11
- 3.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 · 김현권 · 박선숙 · 박정 · 박주민 · 소병훈 · 신창현 · 우원식 · 이재정 · 정성호 · 조웅천 · 최인호 의원 발의) ..... 11
- 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강창일 · 윤호중 · 김관영 · 양승조 · 인재근 · 위성곤 · 이종걸 · 김영춘 · 박정 의원 발의) ..... 11
- 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유승희 · 소병훈 · 정재호 · 윤후덕 · 김민기 · 기동민 · 김영진 · 표창원 · 한정애 · 조승래 · 유동수 · 김철민 · 어기구 · 강창일 · 김상희 · 김병기 · 신창현 · 김병관 · 김한정 · 변재일 · 김종민 · 송기현 · 백재현 · 김영춘 · 최운열 · 원혜영 · 심기준 의원 발의) ..... 11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여상규 · 김경진 · 원유철 · 이채익 · 김영우 · 김현아 · 박덕흠 · 박성중 · 유재중 의원 발의) ..... 11
-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강훈식 · 김정우 · 김해영 · 박정 · 백재현 · 서영교 · 서형수 · 신창현 · 조승래 · 표창원 의원 발의) ..... 11
-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 · 김광수 · 김삼화 · 김정우 · 김종희 · 노응래 · 신용현 · 이동섭 · 이연주 · 인재근 · 정성호 · 천정배 의원 발의) ..... 11
- 9. 로봇기본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조승래 · 윤후덕 · 김경협 · 김상희 · 이춘석 · 안민석 · 어기구 · 김종민 · 박광온 · 유승희 · 안호영 · 이원욱 · 김철민 · 김영호 · 채윤경 · 이용득 · 박경미 · 김병욱 · 서영교 · 강훈식 · 이수혁 · 최운열 · 최인호 · 이훈 · 박정 · 심재권 · 신창현 · 송기현 · 김두관 · 전현희 · 노응래 · 설훈 · 임종성 · 위성곤 · 박재호 · 기동민 · 심기준 의원 발의) ..... 11
-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이학재 · 김석기 · 김정재 · 김성원 · 정태옥 · 박덕흠 · 송희경 · 이철우 · 김한표 의원 발의) ..... 11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 · 곽대훈 · 金成泰 · 강석진 · 이종명 · 김정재 · 이채익 · 이진복 · 경대수 · 이우현 의원 발의) ..... 11
-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강훈식 · 이찬열 · 변재일 · 소병훈 · 조배숙 · 송옥주 · 기동민 · 이철희 · 한정애 · 김종훈 · 이정미 · 박주민 · 장병완 의원 발의) ..... 11
-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 · 김병욱 · 이춘석 · 최명길 · 유승희 · 임종성 · 홍익표 · 정성호 · 이철희 · 박범계 · 박경미 · 변재일 · 박정 · 채이배 · 김정우 · 김경진 의원 발의) ..... 12
-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김정재 · 이채익 · 김도읍

- 최연혜 · 정운천 · 김승희 · 엄용수 · 조훈현 · 임이자 의원 발의) ..... 12
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 12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유성엽 · 조배숙 · 김중로 · 최명길 · 박정 · 신용현 · 조정식 · 박준영 · 김동철 · 홍익표 · 김경진 · 이채익 · 정운천 의원 발의) ..... 12
1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송희경 · 나경원 · 정운천 · 김종석 · 이정미 · 한정애 · 황영철 · 송기석 · 박덕흠 의원 발의) ..... 12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 12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 · 박재호 · 홍익표 · 박정 · 백혜련 · 인재근 · 조배숙 · 김성수 · 소병훈 · 윤관석 · 전재수 의원 발의) ..... 12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정재호 · 박홍근 · 김영진 · 노웅래 · 김해영 · 전해숙 · 진선미 · 김상희 · 박재호 의원 발의) ..... 12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김성태 · 김성찬 · 이명수 · 하태경 · 유재중 · 정갑윤 · 김기선 · 원유철 · 심재철 의원 발의) ..... 12
2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김철민 · 서영교 · 윤후덕 · 강창일 · 오제세 · 박주민 · 신창현 · 김병관 · 민병두 · 김영춘 의원 발의) ..... 12
23.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 12
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이종배 · 하태경 · 문진국 · 김석기 · 김선동 · 이종명 · 박명재 · 함진규 · 송희경 의원 발의) ..... 12
2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 · 김한표 · 송희경 · 김규환 · 김도읍 · 이명수 · 김승희 · 이종명 · 홍문표 · 윤한홍 의원 발의) ..... 12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민홍철 · 김수민 · 박재호 · 홍익표 · 김병관 · 박정 · 우원식 · 전재수 · 김영춘 의원 발의) ..... 12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윤호중 · 박지원 · 이용주 · 정인화 · 김병욱 · 김해영 · 조배숙 · 김삼화 · 신경민 의원 발의) ..... 12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 · 김영우 · 오신환 · 이학재 · 정병국 · 유의동 · 홍철호 · 유승민 · 김세연 · 이해훈 · 황영철 · 강길부 · 박인숙 · 김관영 · 박정 · 김재경 · 김무성 · 백재현 · 윤영일 · 이완영 · 이원욱 · 주호영 · 이춘석 · 유성엽 · 함진규 · 문희상 · 안호영 · 홍일표 · 손금주 의원 발의) ..... 12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 · 이종걸 · 이동섭 · 윤영일 · 전재수 · 이찬열 · 김영진 · 서영교 · 강창일 · 전해숙 의원 발의) ..... 12
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권미혁 · 기동민 · 김경협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영주 · 김영호 · 김철민 · 김한정 · 노웅래 · 민병두 · 박정 · 박경미 · 박남춘 · 박영선 · 박재호 · 박주민 · 서형수 · 소병훈 · 송기현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어기구 · 유동수 · 유승희 · 이훈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위성곤 · 이정미 · 이찬열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정성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최운열 · 추미애 · 홍영표 · 우원식 의원 발의) ..... 12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김병욱 · 김삼화 · 김수민 · 민병두 · 박재호 · 박정 · 박홍근 · 서형수 · 신창현 · 안규백 · 어기구 · 유승희 · 윤관석 · 이용득 · 이정미 · 임종성 · 조정식 · 한정애 의원 발의) ..... 13
3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수민 · 최명길 · 이동섭 · 전현희 · 김중희 · 주승용 · 조배숙 · 최도자 · 황주홍 · 윤호중 · 손금주 의원 발의) ..... 13

33.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김종훈 · 정동영 · 이용득 · 박용진 · 윤소하 · 추혜선 · 김종대 · 이정미 · 노회찬 의원 발의) ..... 13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신경민 · 박정 · 정성호 · 권칠승 · 이원욱 · 송옥주 · 조배숙 · 박재호 · 신창현 · 설훈 의원 발의) ..... 13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 · 김성원 · 이종명 · 송석준 · 김상훈 · 박인숙 · 김태흠 · 이우현 · 유재중 · 윤재옥 · 이채익 · 김광립 의원 발의) ..... 13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 · 권칠승 · 송기현 · 김해영 · 어기구 · 전재수 · 우원식 · 전해숙 · 서영교 · 최인호 · 최운열 · 김경수 · 김영춘 의원 발의) ..... 13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강병원 · 강창일 · 김병욱 · 김상희 · 김영호 · 김한표 · 노웅래 · 박정 · 박주민 · 송기현 · 심재권 · 안민석 · 양승조 · 어기구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은혜 · 윤소하 · 이원욱 · 정재호 · 최운열 의원 발의) ..... 13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이상돈 · 박선숙 · 유승희 · 윤후덕 · 김철민 · 홍의락 · 이종걸 · 박준영 · 송기석 · 김삼화 · 김관영 의원 발의) ..... 13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최인호 · 이동섭 · 강병원 · 이찬열 · 전재수 · 서영교 · 김민기 · 박재호 · 서형수 의원 발의) ..... 13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신용현 · 최명길 · 주승용 · 김삼화 · 송기석 · 유동수 · 이동섭 · 장정숙 · 황주홍 · 박정 · 조정식 의원 발의) ..... 13
4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김병욱 · 윤후덕 · 강창일 · 노웅래 · 김해영 · 이찬열 · 어기구 · 김병관 · 김철민 · 신경민 의원 발의) ..... 13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영진 · 전현희 · 황희 · 김수민 · 김경수 · 박정 · 권칠승 · 설훈 · 김상희 의원 발의) ..... 13
4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김영춘 · 박준영 · 김경수 · 전해숙 · 이동섭 · 김동철 · 황주홍 · 김삼화 · 유동수 의원 발의) ..... 13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이원욱 · 서영교 · 민홍철 · 인재근 · 백재현 · 조정식 · 이개호 · 박정 · 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3) ..... 13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태규 · 김종희 · 주승용 · 이동섭 · 김광수 · 이찬열 · 이종걸 · 정인화 · 정동영 · 장정숙 의원 발의) ..... 13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 · 박재호 · 백혜련 · 소병훈 · 전재수 · 노웅래 · 박남춘 · 김병기 · 안민석 · 심기준 의원 발의) ..... 13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김선동 · 김종석 · 이종명 · 이주영 · 정갑윤 · 최연혜 · 이명수 · 박명재 · 문진국 · 김상훈 · 박대출 의원 발의) ..... 13
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이개호 · 김민기 · 손혜원 · 설훈 · 문희상 · 김현권 · 유동수 · 조승래 · 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7448) ..... 13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주승용 · 이동섭 · 황주홍 · 김삼화 · 신용현 · 이태규 · 송기석 · 오세정 · 최도자 · 장정숙 의원 발의) ..... 14
5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김철민 · 서영교 · 박남춘 · 윤후덕 · 강창일 · 오제세 · 박주민 · 신창현 · 김병관 의원 발의) ..... 14
5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 · 정태욱 · 김한표 · 김성원 · 김성찬 · 안상수 · 박명재 · 김성태 · 이진복 · 이은재 의원 발의) ..... 14
5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성일종 · 이종명 · 이채익 · 김명연 · 김규환 · 김진태 · 김석기 · 김성원 · 박맹우 의원 발의) ..... 14
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조정태 · 김성찬 · 신보라 · 윤한홍 · 송석준 · 박성중 · 곽대훈 · 함진규 · 성일종 의원 발의) ..... 14

54.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 · 엄용수 · 이종명 · 이주영 · 유기준 · 유재중 · 김승희 · 김규환 · 함진규 · 이현재 · 조경태 · 정유섭 의원 발의) ..... 14
5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홍문표 · 이재정 · 조승래 · 장정숙 · 강창일 · 윤관석 · 안규백 · 박정 · 조정식 의원 발의) ..... 14
5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서형수 · 윤관석 · 정성호 · 민홍철 · 강병원 · 박남춘 · 김영주 · 김영진 · 신창현 의원 발의) ..... 14
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조경태 · 윤한홍 · 곽대훈 · 송석준 · 박성중 · 신보라 · 성일종 · 함진규 · 김성찬 의원 발의) ..... 14
5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이철우 · 김선동 · 김상훈 · 이채익 · 이철규 · 김수민 · 김승희 · 유재중 · 이주영 · 윤한홍 의원 발의) ..... 14
5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김병욱 · 윤후덕 · 강창일 · 노웅래 · 김해영 · 이찬열 · 어기구 · 김병관 · 김철민 · 신경민 의원 발의) ..... 14
6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박준영 · 전해숙 · 황주홍 · 김규환 · 윤종오 · 김동철 · 김삼화 · 김중희 · 최경환(국) · 이찬열 의원 발의) ..... 14
6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조경태 · 김성찬 · 신보라 · 윤한홍 · 송석준 · 박성중 · 곽대훈 · 함진규 · 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7860) ..... 14
6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조경태 · 윤한홍 · 곽대훈 · 송석준 · 박성중 · 신보라 · 성일종 · 함진규 · 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7905) ..... 14
63.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박정 · 김병욱 · 황주홍 · 박재호 · 김경진 · 신창현 · 홍의락 · 조배숙 · 정성호 의원 발의) ..... 14
64.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김병기 · 김석기 · 정유섭 · 염동열 · 정양석 · 윤상직 · 안상수 · 조원진 · 이주영 의원 발의) ..... 14
6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홍일표 · 이정미 · 유승희 · 정성호 · 박홍근 · 서형수 · 신창현 · 안규백 · 김영진 · 유동수 · 소병훈 의원 발의) ..... 14
6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 · 김학용 · 이종명 · 이만희 · 정성호 · 김석기 · 박준영 · 김진태 · 박찬우 · 박성중 · 신보라 · 신용현 · 강효상 · 엄용수 · 원유철 의원 발의) ..... 14
6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문진국 · 신상진 · 안상수 · 박명재 · 홍일표 · 서청원 · 김명연 · 홍문중 · 최연혜 의원 발의) ..... 14
6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이현재 · 배덕광 · 김영춘 · 문진국 · 박찬우 · 심재권 · 박인숙 · 이종명 · 이채익 의원 발의) ..... 15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金成泰 · 송희경 · 김규환 · 김성태 · 노웅래 · 나경원 · 이명수 · 정병국 · 유재중 의원 발의) ..... 15
7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김성태 · 함진규 · 김세연 · 심기준 · 박성중 · 유기준 · 최교일 · 이우현 · 이완영 · 이양수 · 이주영 · 송석준 · 박대출 · 임이자 · 추경호 · 정태옥 의원 발의) ..... 15
7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성찬 · 박덕흠 · 김석기 · 박명재 · 하태경 · 이종배 · 이우현 · 송희경 · 문진국 · 이학재 · 김선동 의원 발의) ..... 15
72.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정갑윤 · 김정훈 · 이현재 · 박주민 · 권철승 · 김성원 · 김규환 · 이석현 · 송석준 의원 발의) ..... 15
7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 · 정

갑윤 · 유기준 · 나경원 · 이주영 · 김성태 · 김규환 · 김승희 · 김종석 · 윤영일 · 김도읍 의원 발의) (의안번호 7233) .....	15
7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 · 김 성태 · 김도읍 · 이주영 · 김재원 · 문진국 · 최연혜 · 김종석 · 김규환 · 이명수 · 엄용수 의원 발의) (의안번호 7527) .....	15
75.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박재호 · 권미혁 · 정재호 · 기동 민 · 이철희 · 전현희 · 박정 · 권칠승 · 어기구 · 문미옥 · 신창현 · 박찬대 · 최운열 · 유승희 · 송기 현 · 강훈식 · 김철민 의원 발의) .....	15
7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임중 성 · 박주민 · 이학영 · 이용득 · 박남춘 · 이해찬 · 김중대 · 위성곤 · 정성호 · 박정 의원 발의) .....	15
7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 · 송 희경 · 권석창 · 강석호 · 함진규 · 원유철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김정재 의원 발의) .....	15
7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정 갑윤 · 서청원 · 정태옥 · 이종배 · 김선동 · 장석춘 · 박대출 · 김명연 · 김학용 의원 발의) .....	15
7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민병두 · 이학영 · 정재호 · 백혜 련 · 박광온 · 최명길 · 박용진 · 심상정 · 강병원 · 조정식 의원 발의) .....	15
8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경대수 · 강석진 · 심재철 · 윤중 필 · 김규환 · 정우택 · 박명재 · 신보라 · 민경욱 · 함진규 의원 발의) .....	15
8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우원식 · 김민기 · 제윤경 · 기동민 · 황희 · 권칠승 · 김종민 · 설훈 · 표창원 · 김현미 · 추미애 · 김태년 · 김관영 · 김병욱 · 문 미옥 · 서영교 · 최명길 · 정춘숙 · 김두관 · 김정우 · 강병원 · 김영주 · 심재권 · 이학영 · 윤관석 · 김영진 · 노웅래 · 전해철 · 김병기 · 김해영 의원 발의) .....	15
82.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김영 진 · 이원욱 · 이철희 · 김중로 · 기동민 · 윤후덕 · 권미혁 · 정재호 · 김현권 · 박정 · 이훈 · 전현희 · 강병원 · 강훈식 · 송기현 · 제윤경 · 조승래 · 김병관 · 박남춘 · 박찬대 · 소병훈 의원 발의) .....	15
83.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 · 이종걸 · 신경민 · 이춘석 · 권칠승 · 서영교 · 전해숙 · 박홍근 · 강창일 · 이재정 · 박남춘 의원 발의) .....	15
84.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강창일 · 노웅래 · 김병욱 · 홍의락 · 윤관석 · 유승희 · 소병훈 · 윤후덕 · 이찬열 · 한정애 · 김영춘 의원 발의) .....	15
85.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최인 호 · 이찬열 · 문희상 · 박재호 · 한정애 · 이용득 · 김현권 · 윤호중 · 인재근 의원 발의) .....	16
8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최경 환(국) · 소병훈 · 손금주 · 이연주 · 박주선 · 김중희 · 이찬열 · 김동철 · 장병완 · 조배숙 의원 발의) .....	16
87.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수 민 · 백혜련 · 권칠승 · 신경민 · 이학영 · 이찬열 · 이춘석 · 김영주 · 김해영 의원 발의) .....	16
8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문미옥 · 어기구 · 위성곤 · 김병관 · 김상희 · 이철희 · 이훈 · 유동수 · 소병훈 · 김철민 · 조승래 · 김영호 · 원혜영 · 강훈식 · 최운열 · 전현희 · 우원식 · 심기준 · 김종민 · 기동민 의원 발의) .....	16
8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중 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	16
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이원욱 · 최명 길 · 이수혁 · 민병두 · 박정 · 권칠승 · 전현희 · 양승조 · 김태년 · 안규백 의원 발의) .....	16

9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 16
9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 · 김성원 · 이종명 · 송석준 · 김상훈 · 박인숙 · 김태흠 · 이우현 · 유재중 · 윤재옥 · 송희경 · 이채익 · 김광림 의원 발의) ..... 16
9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최인호 · 이찬열 · 문희상 · 안민석 · 박재호 · 문미옥 · 한정애 · 김민기 · 안규백 의원 발의) ..... 16
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이학영 · 최인호 · 박정 · 진선미 · 김종민 · 박재호 · 인재근 · 김현권 · 백혜련 · 김병욱 의원 발의) ..... 16
9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김병욱 · 윤후덕 · 강창일 · 김해영 · 이찬열 · 어기구 · 김병관 · 김철민 · 신경민 의원 발의) ..... 16
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이우현 · 박덕흠 · 김기선 · 곽대훈 · 정유섭 · 강석진 · 지상욱 · 김석기 · 이철규 · 이채익 의원 발의) ..... 16
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조정식 · 박정 · 신경민 · 박홍근 · 조배숙 · 김경진 · 위성곤 · 홍익표 · 김병욱 · 우원식 · 김관영 · 신창현 · 권철승 · 박용진 의원 발의) ..... 16
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이만희 · 이현승 · 정태욱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 16
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 · 최연혜 · 윤한홍 · 김규환 · 유민봉 · 김명연 · 곽대훈 · 여상규 · 정운천 · 주호영 의원 발의) ..... 16
1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김삼화 · 조배숙 · 김경진 · 김종희 · 황주홍 · 박준영 · 최명길 · 김수민 · 김중로 의원 발의) ..... 16
10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우원식 · 변재일 · 박정 · 이개호 · 심재권 · 박재호 · 정유섭 · 유동수 · 유승희 의원 발의) ..... 16
10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이용득 · 박정 · 최명길 · 박재호 · 김철민 · 문미옥 · 김해영 · 이원욱 · 유동수 의원 발의) ..... 16
10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유재중 · 백승주 · 이주영 · 이종명 · 윤종필 · 김성태 · 김성찬 · 김승희 · 한선교 의원 발의) ..... 16
10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이주영 · 최연혜 · 김선동 · 정갑윤 · 이명수 · 윤한홍 · 박명재 · 문진국 · 이종명 의원 발의) ..... 17
10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 17
10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조승래 · 서형수 · 안규백 · 민홍철 · 김영호 · 한정애 · 김병기 · 박정 · 송옥주 · 신창현 · 김해영 · 임종성 · 김정우 의원 발의) ..... 17
10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개호 · 소병훈 · 김병욱 · 김철민 · 기동민 · 서형수 · 인재근 · 이찬열 · 민홍철 · 정성호 · 박찬대 · 김정우 · 박남춘 · 백재현 의원 발의) ..... 17
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김정재 · 최연혜 · 김명연 · 이완영 · 김학용 · 경대수 · 김종석 · 유민봉 · 이채익 의원 발의) ..... 17
1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 · 박정 · 김해영 · 전재수 · 송기현 · 서영교 · 노웅래 · 어기구 · 권철승 · 최인호 · 김영춘 의원 발의) ..... 17
1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

수 · 김중로 · 황주홍 · 최도자 · 이동섭 · 박주현 · 천정배 · 김삼화 · 김관영 · 유성엽 · 김종희 의원 발의) ..... 17

1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어기구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희 · 김삼화 · 김동철 · 권은희 · 김병관 · 박정 · 신용현 의원 발의) ..... 17

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문미옥 · 어기구 · 위성곤 · 김병관 · 김상희 · 이철희 · 이훈 · 유동수 · 소병훈 · 김철민 · 조승래 · 김영호 · 원혜영 · 강훈식 · 최운열 · 전현희 · 우원식 · 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0) ..... 17

1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문미옥 · 어기구 · 위성곤 · 김병관 · 김상희 · 이철희 · 이훈 · 유동수 · 소병훈 · 김철민 · 조승래 · 김영호 · 원혜영 · 강훈식 · 최운열 · 전현희 · 우원식 · 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2) ..... 17

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여상규 · 김경진 · 원유철 · 이채익 · 김영우 · 김현아 · 박덕흠 · 박성중 · 유재중 의원 발의) ..... 17

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김중로 · 황주홍 · 최도자 · 이동섭 · 박주현 · 천정배 · 김삼화 · 김관영 · 유성엽 · 김종희 의원 발의) ..... 17

1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이개호 · 소병훈 · 김병욱 · 김철민 · 노웅래 · 기동민 · 서형수 · 인재근 · 이찬열 · 민홍철 · 정성호 · 박찬대 · 김정우 · 박남춘 · 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8143) ..... 17

1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 · 최경환(국) · 김종희 · 김삼화 · 장정숙 · 박주현 · 김중로 · 이용호 · 정인화 · 오세정 · 이동섭 의원 발의) ..... 17

1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김철민 · 최도자 · 박정 · 김성수 · 이동섭 · 곽대훈 · 김중로 · 김삼화 · 최명길 · 황주홍 · 오세정 · 김성식 · 조배숙 의원 발의) ..... 17

11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 김중대 · 진선미 · 김종민 · 김종훈 · 윤종오 의원 발의) ..... 17

1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 · 박인숙 · 함진규 · 김도읍 · 이은권 · 김정재 · 유의동 · 이우현 · 김학용 · 서청원 의원 발의) ..... 17

1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백혜련 · 김병기 · 문미옥 · 윤관석 · 김영진 · 이원욱 · 권칠승 · 박재호 · 이종걸 의원 발의) ..... 17

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 · 이동섭 · 박지원 · 박경미 · 윤영일 · 김경진 · 조배숙 · 박선숙 · 金成泰 · 정동영 · 최운열 · 김한정 · 김종희 · 이완영 · 김성수 · 김광수 · 송희경 · 박정 · 이종배 · 서형수 · 이만희 · 최명길 의원 발의) ..... 17

123. 등록기간 경과 REC 등록에 관한 청원(손금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8

124. 미세먼지 이슈화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오염방지업무의 용역근로자 및 시설운영 개선에 관한 청원(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8

1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개정에 관한 청원(유동수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18

126. 초고압 송전선로(765kV, 345kV) 경과지 주민재산 및 건강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청원(우원식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 18

127.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정우택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 · 金成泰 · 김순례 · 김승희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찬우 · 배덕광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종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욱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현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용기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욱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최경환(한)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정운천 의원 발의) ..... 18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병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5일 금요일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였던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를 해서 청문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경륜 있고 역량 있는 분이 조기에 지명이 되어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좋은 분이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박정·김종민·인재근·위성곤·소병훈·정재호·노웅래·황주홍·김중희·이종걸·김철민·심재권·송옥주·박주민 의원 발의)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욱·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
3.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현권·박선숙·박정·박주민·소병훈·신창현·우원식·이재정·정성호·조응천·최인호 의원 발의)
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강창일·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위성곤·이종걸·김영춘·박정 의원 발의)
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유승희·소병훈·정재호·윤후덕·김민기·기동민·김영진·표창원·한정애·조승래·유동수·김철민·어기구·강창일·김상희·김병기·

신창현·김병관·김한정·변재일·김종민·송기현·백재현·김영춘·최운열·원혜영·심기준 의원 발의)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정우·김해영·박정·백재현·서영교·서형수·신창현·조승래·표창원 의원 발의)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김광수·김삼화·김정우·김중희·노웅래·신용현·이동섭·이언주·인재근·정성호·천정배 의원 발의)
9. 로봇기본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조승래·윤후덕·김경협·김상희·이춘석·안민석·어기구·김종민·박광온·유승희·안호영·이원욱·김철민·김영호·제윤경·이용득·박경미·김병욱·서영교·강훈식·이수혁·최운열·최인호·이훈·박정·심재권·신창현·송기현·김두관·전현희·노웅래·설훈·임종성·위성곤·박재호·기동민·심기준 의원 발의)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김석기·김정재·김성원·정태욱·박덕흠·송희경·이철우·김한표 의원 발의)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金成泰·강석진·이종명·김정재·이채익·이진복·경대수·이우현 의원 발의)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강훈식·이찬열·변재일·소병훈·조배숙·

송옥주 · 기동민 · 이철희 · 한정애 · 김종훈 · 이정미 · 박주민 · 장병완 의원 발의)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 · 김병욱 · 이춘석 · 최명길 · 유승희 · 임종성 · 홍익표 · 정성호 · 이철희 · 박범계 · 박경미 · 변재일 · 박정 · 채이배 · 김정우 · 김경진 의원 발의)
1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김정재 · 이채익 · 김도읍 · 최연혜 · 정운천 · 김승희 · 엄용수 · 조훈현 · 임이자 의원 발의)
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유성엽 · 조배숙 · 김중로 · 최명길 · 박정 · 신용현 · 조정식 · 박준영 · 김동철 · 홍익표 · 김경진 · 이채익 · 정운천 의원 발의)
1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송희경 · 나경원 · 정운천 · 김종석 · 이정미 · 한정애 · 황영철 · 송기석 · 박덕흠 의원 발의)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 · 박재호 · 홍익표 · 박정 · 백혜련 · 인재근 · 조배숙 · 김성수 · 소병훈 · 윤관석 · 전재수 의원 발의)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 · 정재호 · 박홍근 · 김영진 · 노웅래 · 김해영 · 전혜숙 · 진선미 · 김상희 · 박재호 의원 발의)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김성태 · 김성찬 · 이명수 · 하태경 · 유재중 · 정갑윤 · 김기선 · 원유철 · 심재철 의원 발의)
2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김철민 · 서영교 · 윤후

덕 · 강창일 · 오제세 · 박주민 · 신창현 · 김병관 · 민병두 · 김영춘 의원 발의)

23.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이종배 · 하태경 · 문진국 · 김석기 · 김선동 · 이종명 · 박명재 · 함진규 · 송희경 의원 발의)
2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 · 김한표 · 송희경 · 김규환 · 김도읍 · 이명수 · 김승희 · 이종명 · 홍문표 · 윤한홍 의원 발의)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민홍철 · 김수민 · 박재호 · 홍익표 · 김병관 · 박정 · 우원식 · 전재수 · 김영춘 의원 발의)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윤호중 · 박지원 · 이용주 · 정인화 · 김병욱 · 김해영 · 조배숙 · 김삼화 · 신경민 의원 발의)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 · 김영우 · 오신환 · 이학재 · 정병국 · 유의동 · 홍철호 · 유승민 · 김세연 · 이혜훈 · 황영철 · 강길부 · 박인숙 · 김관영 · 박정 · 김재경 · 김무성 · 백재현 · 윤영일 · 이완영 · 이원욱 · 주호영 · 이춘석 · 유성엽 · 함진규 · 문희상 · 안호영 · 홍일표 · 손금주 의원 발의)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 · 이종걸 · 이동섭 · 윤영일 · 전재수 · 이찬열 · 김영진 · 서영교 · 강창일 · 전혜숙 의원 발의)
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권미혁 · 기동민 · 김경협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영주 · 김영호 · 김철민 · 김한정 · 노웅래 · 민병두 · 박정 · 박경미 · 박남춘 · 박영선 · 박재호 · 박주민 · 서형수 · 소병훈 · 송기

- 현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어기구 · 유동수 · 유승희 · 이훈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위성곤 · 이정미 · 이찬열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정성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최운열 · 추미애 · 홍영표 · 우원식 의원 발의)
-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병원 · 김병욱 · 김삼화 · 김수민 · 민병두 · 박재호 · 박정 · 박홍근 · 서형수 · 신창현 · 안규백 · 어기구 · 유승희 · 윤관석 · 이용득 · 이정미 · 임종성 · 조정식 · 한정애 의원 발의)
- 3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수민 · 최명길 · 이동섭 · 전현희 · 김종희 · 주승용 · 조배숙 · 최도자 · 황주홍 · 윤호중 · 손금주 의원 발의)
- 33.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 전환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김종훈 · 정동영 · 이용득 · 박용진 · 윤소하 · 추혜선 · 김종대 · 이정미 · 노회찬 의원 발의)
- 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 · 신경민 · 박정 · 정성호 · 권칠승 · 이원욱 · 송옥주 · 조배숙 · 박재호 · 신창현 · 설훈 의원 발의)
-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 · 김성원 · 이종명 · 송석준 · 김상훈 · 박인숙 · 김태흠 · 이우현 · 유재중 · 윤재옥 · 이채익 · 김광림 의원 발의)
-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 · 권칠승 · 송기현 · 김해영 · 어기구 · 전재수 · 우원식 · 전해숙 · 서영교 · 최인호 · 최운열 · 김경수 · 김영춘 의원 발의)
-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강병원 · 강창일 · 김병욱 · 김삼희 · 김영호 · 김한표 · 노웅래 · 박정 · 박주민 · 송기현 · 심재권 · 안민석 · 양승조 · 어기구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은혜 · 윤소하 · 이원욱 · 정재호 · 최운열 의원 발의)
-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이상돈 · 박선숙 · 유승희 · 윤후덕 · 김철민 · 홍의락 · 이종걸 · 박준영 · 송기석 · 김삼화 · 김관영 의원 발의)
-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최인호 · 이동섭 · 강병원 · 이찬열 · 전재수 · 서영교 · 김민기 · 박재호 · 서형수 의원 발의)
-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신용현 · 최명길 · 주승용 · 김삼화 · 송기석 · 유동수 · 이동섭 · 장정숙 · 황주홍 · 박정 · 조정식 의원 발의)
- 4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김병욱 · 윤후덕 · 강창일 · 노웅래 · 김해영 · 이찬열 · 어기구 · 김병관 · 김철민 · 신경민 의원 발의)
-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영진 · 전현희 · 황희 · 김수민 · 김경수 · 박정 · 권칠승 · 설훈 · 김상희 의원 발의)
- 4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김영춘 · 박준영 · 김경수 · 전해숙 · 이동섭 · 김동철 · 황주홍 · 김삼화 · 유동수 의원 발의)
-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이원욱 · 서영교 · 민홍철 · 인재근 · 백재현 · 조정식 · 이개호 · 박정 · 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3)
-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태규 · 김종희 · 주승용 · 이동섭 · 김광수 · 이찬열 · 이종걸 · 정인화 · 정동영 · 장정숙 의원 발의)
-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송기현 · 박재호 · 백혜련 · 소병훈 · 전재수 · 노웅래 · 박남춘 · 김병기 · 안민석 · 심기준 의원 발의)
-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김선동 · 김종석 · 이종명 · 이주영 · 정갑윤 · 최연혜 · 이명수 · 박명재 · 문진국 · 김상훈 · 박대출 의원 발의)
- 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이개호 · 김민기 · 손혜원 · 설훈 · 문희상 · 김현권 · 유동수 · 조승

- 래·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7448)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주승용·이동섭·황주홍·김삼화·신용현·이태규·송기석·오세정·최도자·장정숙 의원 발의)
5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철민·서영교·박남춘·윤후덕·강창일·오제세·박주민·신창현·김병관 의원 발의)
5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정대욱·김한표·김성원·김성찬·안상수·박명재·김성태·이진복·이은재 의원 발의)
5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성일중·이종명·이채익·김명연·김규환·김진태·김석기·김성원·박맹우 의원 발의)
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조경태·김성찬·신보라·윤한홍·송석준·박성중·곽대훈·함진규·성일중 의원 발의)
54.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엄용수·이종명·이주영·유기준·유재중·김승희·김규환·함진규·이현재·조경태·정유섭 의원 발의)
5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홍문표·이재정·조승래·장정숙·강창일·윤관석·안규백·박정·조정식 의원 발의)
5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형수·윤관석·정성호·민홍철·강병원·박남춘·김영주·김영진·신창현 의원 발의)
5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조경태·윤한홍·곽대훈·송석준·박성중·신보라·성일중·함진규·김성찬 의원 발의)
5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이철우·김선동·김상훈·이채익·이철규·김수민·김승희·유재중·이주영·윤한홍 의원 발의)
5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노웅래·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
6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박준영·전혜숙·황주홍·김규환·윤종오·김동철·김삼화·김종희·최경환(국)·이찬열 의원 발의)
6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조경태·김성찬·신보라·윤한홍·송석준·박성중·곽대훈·함진규·성일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7860)
6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조경태·윤한홍·곽대훈·송석준·박성중·신보라·성일중·함진규·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7905)
63.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박정·김병욱·황주홍·박재호·김경진·신창현·홍의락·조배숙·정성호 의원 발의)
6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병기·김석기·정유섭·염동열·정양석·윤상직·안상수·조원진·이주영 의원 발의)
6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홍일표·이정미·유승희·정성호·박홍근·서형수·신창현·안규백·김영진·유동수·소병훈 의원 발의)
6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학용·이종명·이만희·정성호·김석기·박준영·김진태·박찬우·박성중·신보라·신용현·강효상·엄용수·원유철 의원 발의)
6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문진국·신상진·안상수·박

- 명재 · 홍일표 · 서청원 · 김명연 · 홍문중 · 최연혜 의원 발의)
6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이현재 · 배덕광 · 김영춘 · 문진국 · 박찬우 · 심재권 · 박인숙 · 이종명 · 이채익 의원 발의)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 · 金成泰 · 송희경 · 김규환 · 김성태 · 노웅래 · 나경원 · 이명수 · 정병국 · 유재중 의원 발의)
7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김성태 · 함진규 · 김세연 · 심기준 · 박성중 · 유기준 · 최교일 · 이우현 · 이완영 · 이양수 · 이주영 · 송석준 · 박대출 · 임이자 · 추경호 · 정태옥 의원 발의)
7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성찬 · 박덕흠 · 김석기 · 박명재 · 하태경 · 이종배 · 이우현 · 송희경 · 문진국 · 이학재 · 김선동 의원 발의)
72.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정갑윤 · 김정훈 · 이현재 · 박주민 · 권칠승 · 김성원 · 김규환 · 이석현 · 송석준 의원 발의)
7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 · 정갑윤 · 유기준 · 나경원 · 이주영 · 김성태 · 김규환 · 김승희 · 김중석 · 윤영일 · 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3)
7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 · 김성태 · 김도읍 · 이주영 · 김재원 · 문진국 · 최연혜 · 김종석 · 김규환 · 이명수 · 엄용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527)
75.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박재호 · 권미혁 · 정재호 · 기동민 · 이철희 · 전현희 · 박정 · 권칠승 · 어기구 · 문미옥 · 신창현 · 박찬대 · 최운열 · 유승희 · 송기현 · 강훈식 · 김철민 의원 발의)
7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임종성 · 박주민 · 이학영 · 이용득 · 박남춘 · 이해찬 · 김종대 · 위성곤 · 정성호 · 박정 의원 발의)
7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 · 송희경 · 권석창 · 강석호 · 함진규 · 원유철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김정재 의원 발의)
7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 · 정갑윤 · 서청원 · 정태옥 · 이종배 · 김선동 · 장석춘 · 박대출 · 김명연 · 김학용 의원 발의)
7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민병두 · 이학영 · 정재호 · 백혜련 · 박광온 · 최명길 · 박용진 · 심상정 · 강병원 · 조정식 의원 발의)
8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경대수 · 강석진 · 심재철 · 윤종필 · 김규환 · 정우택 · 박명재 · 신보라 · 민경욱 · 함진규 의원 발의)
8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우원식 · 김민기 · 제윤경 · 기동민 · 황희 · 권칠승 · 김종민 · 설훈 · 표창원 · 김현미 · 추미애 · 김태년 · 김관영 · 김병욱 · 문미옥 · 서영교 · 최명길 · 정춘숙 · 김두관 · 김정우 · 강병원 · 김영주 · 심재권 · 이학영 · 윤관석 · 김영진 · 노웅래 · 전해철 · 김병기 · 김혜영 의원 발의)
8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 · 김영진 · 이원욱 · 이철희 · 김중로 · 기동민 · 윤후덕 · 권미혁 · 정재호 · 김현권 · 박정 · 이훈 · 전현희 · 강병원 · 강훈식 · 송기현 · 제윤경 · 조승래 · 김병관 · 박남춘 · 박찬대 · 소병훈 의원 발의)
8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 · 이종걸 · 신경민 · 이춘석 · 권칠승 · 서영교 · 전해숙 · 박홍근 · 강창일 · 이재정 · 박남춘 의원 발의)
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강창일 · 노웅래 · 김병욱 · 홍의락 · 윤관석 · 유승희 · 소병훈 · 윤후덕 · 이찬열 · 한정애 · 김영춘 의원 발의)

- 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최인호·이찬열·문희상·박재호·한정애·이용득·김현권·윤호중·인재근 의원 발의)
- 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최경환(국)·소병훈·손금주·이언주·박주선·김종희·이찬열·김동철·장병완·조배숙 의원 발의)
- 8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 8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문미옥·어기구·위성곤·김병관·김상희·이철희·이훈·유동수·소병훈·김철민·조승래·김영호·원혜영·강훈식·최운열·전현희·우원식·심기준·김종민·기동민 의원 발의)
- 8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 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최명길·이수혁·민병두·박정·권칠승·전현희·양승조·김태년·안규백 의원 발의)
- 9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 9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김성원·이종명·송석준·김상훈·박인숙·김태흠·이우현·유재중·윤재옥·송희경·이채익·김광림 의원 발의)
- 9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최인호·이찬열·문희상·안민석·박재호·문미옥·한정애·김민기·안규백

- 의원 발의)
- 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학영·최인호·박정·진선미·김종민·박재호·인재근·김현권·백혜련·김병욱 의원 발의)
- 9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
- 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박덕흠·김기선·곽대훈·정유섭·강석진·지상욱·김석기·이철규·이채익 의원 발의)
- 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조정식·박정·신경민·박홍근·조배숙·김경진·위성곤·홍익표·김병욱·우원식·김관영·신창현·권칠승·박용진 의원 발의)
- 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만희·이현승·정태욱·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
- 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최연혜·윤한홍·김규환·유민봉·김명연·곽대훈·여상규·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 1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삼화·조배숙·김경진·김종희·황주홍·박준영·최명길·김수민·김중로 의원 발의)
- 10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우원식·변재일·박정·이개호·심재권·박재호·정유섭·유동수·유승희 의원 발의)
- 10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용득·박정·최명길·박재호·김철민·문미옥·김해영·이원욱·유동수 의원 발의)
- 10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유재중·백승주·이주영·이종명·윤종필·김성태·김성찬·김승희·한선교 의원 발의)

10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이주영·최연혜·김선동·정갑윤·이명수·윤한홍·박명재·문진국·이종명 의원 발의)
10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10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조승래·서형수·안규백·민홍철·김영호·한정애·김병기·박정·송옥주·신창현·김해영·임종성·김정우 의원 발의)
10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개호·소병훈·김병욱·김철민·기동민·서형수·인재근·이찬열·민홍철·정성호·박찬대·김정우·박남춘·백재현 의원 발의)
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김정재·최연혜·김명연·이완영·김학용·경대수·김종석·유민봉·이채익 의원 발의)
1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박정·김해영·전재수·송기현·서영교·노웅래·어기구·권칠승·최인호·김영춘 의원 발의)
1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중로·황주홍·최도자·이동섭·박주현·천정배·김삼화·김관영·유성엽·김종희 의원 발의)
1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어기구·김경진·김중로·김종희·김삼화·김동철·권은희·김병관·박정·신용현 의원 발의)
1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문미옥·어기구·위성곤·김병관·김상희·이철희·이훈·유동수·소병훈·김철민·조승래·김영호·원혜영·강훈식·최운열·전현희·우원식·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0)

1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문미옥·어기구·위성곤·김병관·김상희·이철희·이훈·유동수·소병훈·김철민·조승래·김영호·원혜영·강훈식·최운열·전현희·우원식·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2)
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
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중로·황주홍·최도자·이동섭·박주현·천정배·김삼화·김관영·유성엽·김종희 의원 발의)
1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개호·소병훈·김병욱·김철민·노웅래·기동민·서형수·인재근·이찬열·민홍철·정성호·박찬대·김정우·박남춘·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8143)
1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최경환(국)·김종희·김삼화·장정숙·박주현·김중로·이용호·정인화·오세정·이동섭 의원 발의)
1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김철민·최도자·박정·김성수·이동섭·곽대훈·김중로·김삼화·최명길·황주홍·오세정·김성식·조배숙 의원 발의)
11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진선미·김종민·김종훈·윤종오 의원 발의)
12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1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백혜련·김병기·문미옥·윤관석·김영진·이원욱·권칠승·박재호·이종걸 의원 발의)
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이동섭·박지원·박경미·윤영일·김경진·조배숙·박선숙·金成



로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듯이 시대적 과제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전 부처의 역량도 결집해야 합니다.

이미 이 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치러진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러 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공통적으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하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하여 상정되는 이 기본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대로 동 법률안이 조속히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운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태양광 전도사 전복 전주시을 출신 정운천 의원입니다.

아, 태양광 전도사가 아니라 농촌태양광 전도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소득은 3719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영농조건이 악화되어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태양과 동업하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영세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취약한 농촌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폐지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정적으로 소규모 발전사업, 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만 적용시켜 기준전력가격만큼의 수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로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 부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농가의 자생적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은퇴 귀농인들에게 새로운 귀농모델을 제시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농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태양광은 현장에서 난개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묶어서 현장의 태양광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태양광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발의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상 125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송대호입니다.

상정된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유되어 민원 처리가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해서는 전자정부법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이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적 석유 제품 품질검사 대상자에 수협을 추가하고, 한국 석유관리원의 사업범위에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수협은 일반 주유소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급대행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종 공급단계에서 별도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품질검사 대상에 수협을 추가하는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보관 및 처리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을 취소하며, 목표연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이를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모두 폐쇄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 석탄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고, LNG는 연료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 공급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

의회 또는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지역로봇융합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능형 로봇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그 수단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양 법안 간 위원회 규정이나 창업 지원, 로봇기업화 촉진 시책 마련 규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부분은 통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민경욱 의원과 정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을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지위의 격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바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가능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강화되어 특허심사의 품질이 제고되고 특허분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이 발의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조치와 공론화위원회의 추진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국회에게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 원자력발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9월 10일까지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다시 500명을 선정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종합토론회를 실시하여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전 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이 결정하기에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설비 구축 계획, 영구 중단 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전기요금 상승분 등의 자료들을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이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하여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이익배분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력이익배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목표이익과 이익 배분기준의 산정 가능성, 주주·투자·종업원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이익 공유의 정당성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활성화 및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적극적 운용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동 재단이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과 타 입법례를 참고할 때 조 제목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

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통상마찰 우려 정도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보호 생계형 업종과 일반 생계형 업종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생계형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철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연계 설정, 생계형 업종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기존 발의되어 있는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에 관한 여타 법률안들과 함께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 조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화재안전에 관한 상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상인회와 시장관리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설되는 화재 관련 업무의 문구를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규환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재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이는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함으로써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추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하지 않아도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엑셀러레이터보다 강화된 등록요건을 이 법에 따라 적용받고 있고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가 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업의 생존을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부담금 면제시한이 2017년 8월 2일에 경과되었으므로 부칙에 면제시한 이후부터 이 법 개정 전까지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항 로봇기본법안까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여기구 위원님.

○여기구 위원 제8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측정 오차가 심각한가요, 장관님? 온압보정장치 설치 의무 관련한 법률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심각한가요, 측정 오차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근 9년간 연평균 측정 오차치는 1.05% 수준으로서 선진국도 1~2% 정도 수준으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온압보정장치 설치 비율이 0.2%에 불과하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여기구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도 그런 이유 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보정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같이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가정용에서는 이게 회수하는 데에는 46년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가요? 이게 아마 설치비용이 상당한데 이게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결국 가스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설치비용이 한 95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투자 시에 비용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대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 50%만 지원한다고 해도 산업부 추산으로 8조 5000억 원이나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효율적인지 장관님께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면 그것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써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측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실이익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병완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찬열 위원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1% 내외로 오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1% 오차가 과연 누구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가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해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오차를 1%를 인정을 한다면 그 1%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 무슨 얘기냐면 95만 원이 들든 100만 원이 들든 그것은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의 마이너스 요인을 공급 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하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비자한테 돌아가지 않고 공급자 측에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막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공급자 측이 해야 될 일이지 수요자 측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거지요. 왜냐? 수요자는 사용하는 게 기본인데 거기에서 오차가 있는 것을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면 공급자 측에서 하든가 아니면 공급자 측에서 1%의 오차가 있으니 소비자 측에 1%의 요금을 깎아 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판단을 안 하시면 그것을 공급자 측에서 감수하셔야 될 것이다 이거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이찬열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공계 출신으로서, 가스라는 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지역과 그다음에 계절별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트래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런 1%라도 공급자가 그 이득을 취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편취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지금은 1%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지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지, 오차만 나와 있지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손해를 보는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게 첫 번째, 조사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그 지역마다 그다음에 계절마다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1%의 오차로 인해서, 플러스마이너스 1%니까 이게 소비자로 가는지 공급자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찬열 위원**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것을 저희들이 국표원 통해 가지고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게 판단이 안 설 때는 무조건 소비자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손금주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조금 전의 이찬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관님, 도시가스는 공공재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시장구조도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공재로서 시장구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지만 그런데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 저는 늘 그렇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온압보정장치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최초 도시가스 공급할 때에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너무 과중돼 있어요.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설치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김도읍 위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독거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서민들이 초기 비용부담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가스가 전혀 배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깐 도시가스 보급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의 공공재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고, 지역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대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라도 장관님, 여기 가스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실 텐데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참고하셔서 스스로 개혁도 하고 또 법과 제도 측면에서 개혁이 되는 그 전 단계에서 조치를 빨리, 자구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에 따른 비용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어

느 정도 편차가 있다라는 것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인식을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 공감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더 높은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않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시장구조에 대한 대변혁이 있어야 된다는 공론화가 일기 전에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음,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온압보정장치 보급 또는 설치에 실익이 많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온압보정장치 보급 현황을 보면 산업계에서는 64% 정도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손금주 위원** 그런데 가정 0.01%, 일반 2.56%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온압보정장치 설치의 실익이 그렇게 없다면 왜 굳이 산업계에서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64%가 설치를 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무래도 산업계에서는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충분히 투자 대비 회수의 실익이 있는데 가정용은 산업계하고 비교해서 사용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온압계의 설치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치 실익에 관한, 비용 대비 실익에 관한 관점에서인 것이고 장관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온압 보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산업계나 일반 가정 수요가나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저한테도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0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9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3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1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41항 이러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닝산업하고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제공되는 콘텐츠 제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콘텐츠 제작 시에 저작권 양도를 강제하는 그런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문제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콘텐츠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건수는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리다 보니까 이런 불공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업부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것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조속한 시간 내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사업자 간의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민간 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해서 시장 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박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여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구 위원** 저도 32번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외투기업의 폐업·축소 신고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반대입장이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기업과 다르게 조세 감면이라든지 현금 지원이라든지 입지 지원 등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입는 만큼 의무 지우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찬열 의원님 법안을 왜 반대하시는지 장관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외투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모든 외투기업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1000만 불, 3000만 불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외투기업이 한 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찬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10%의 고용에 따른 감소에 대해서 신고의무는 국내 기업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되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이 외국계기업들이 들어와서 좋은 일하고 그러면 좋은데 외국계기업 중에 하이디스와 아사히글라스의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서 장관님 보고받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받았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런 것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튀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고용 해고하고 이런 기업들,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만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하이디스하고 아사히글라스의 부당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여기구 위원** 그리고 산업부는 외투기업 폐업 시 국내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에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외 기술유출의 64%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정

도로 외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외투기업의 우리나라의 국내기술에 대한 유출을 저희들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기술의 탈취에 대한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적극적인 방안을 잘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지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련해서 NCP(National Contact Point)……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이게 2001년도에 국내에 설치했지만 17년 동안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스와 아사히글라스 등 이런 기업들도 NCP에 의해서 이의제기되어서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취임하기 전에 NCP가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위원님께서 NCP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신 결과 저희들 알고 있는데 앞으로 NCP의 중립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 관련 이슈를 국회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 NCP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 약속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여기구 위원** 그래서 NCP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완**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 건강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온 게 이훈 의원께서 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인간의 암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전자변형 식물을 먹는 경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장관님 혹시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변형 콩 같은 경우 여러……

○**김규환 위원** 콩뿐만 아니라 호박도 그렇고요. 우리 호박 참 좋게 생각하는데 호박도 그랬고 오이도 그랬고 토마토도 그렇고, 방울토마토가 이스라엘에서 개발됐는데 유전자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훈 의원께서 법률을 올려 주셨는데 이걸 진짜 우리가 늦게 이런 법률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 생명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해서라도 더 확실하게 세분화해서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법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해서 시행령에도 더 세분화해서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전자변형 여러 생물들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3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54항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부터 제66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7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8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님.

○**여기구 위원** 67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받은 국·공유채산을 임대료 이하로 국내 협력사에 다시 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투자 확대라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또 외국인회사의 협력사가 아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보여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1차·2차 협력사를 거기 구역 내 30% 미만으로 법에서 규정해서 지금 임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국내 기업의 활력 증진 이런 측면에서는, 30%까지는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저희 부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데 임대받은 사람이 또 다시 전세를 주는 것 이게 타당하세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어차피 임대받은 금액 이하로 임대를 하게끔 저희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로 인한 실익은 외투기업에 들어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9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1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9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3항 중소기업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4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8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 위원 107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부차관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얼마나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청년실업률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9.4%이고, 그래서 IMF 사태 이후로 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는 이렇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22.5% 정도 된다고 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박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구인난에.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박정 위원 원인이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지금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요, 대부분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서 52.3%밖에 안 돼요. 미국은 88.5%, 일본은 85.8%니까 우리랑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박정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 격차가 크고 복리후생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박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할 건데 이 법안이 107항 법안입니다.

지금 문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하는 기간이 7년이 안 되어서 문제잖아요. 대부분 6.3년 정도면 이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금 격차도 크고.

그래서 중진공에서도 아마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하고 그리고 기업이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출산까지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들어 보셨지요, 청사초롱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들어봤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투플러스원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재원이 적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동참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정부에서 성과보상기금이, 지금 중진공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정부재정이 약 3조 5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좀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하여간 아시는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채움공제는 2년 주기잖아요. 이것은 더 장기적인 미스매치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원 입장에서도 투플러스원 정책에 한 7조 들어가는데 이것은 3조 5000억 정도 해서 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이 정책이 더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19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22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부터 제126항까지의 4건 청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여기에도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

해서 요즘 청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데 우리 위원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 의견이 28건이나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것이 6건 정도가 되고 나머지 22건은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좀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요즘 사실은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소규모 점포라든가 유통산업 관련된 골목 시장이 전반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울의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청원도 지금 빈발하고 있고, 지역에 가 보면 어쨌든 간에 경제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산자부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 28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관에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정리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면세점이 유통산업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가 요즘 약간의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유통산업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형식과 내용을 조금 달리 해석하는 지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자부 의견이 무엇인지 여기서 즉답을 하기 힘들다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한번 의견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우선 장관님 파악이 되어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되어 있으면 담당 간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유통산업은 항상 유통산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의 편익 그리고 소영세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운 점 그 세 가지 축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면세점은 유통산업법에 포함되는지 쪽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방금 김종훈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대국회 들어와서 사실 지금 상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들을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체 순위로 본다면, 건수로 보면 그렇게 서열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무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만 일부 처리를 했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역시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계류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앞으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9월 국회에서 법안처리의 실적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법안소위 일정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잡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처리뿐만이 아니라 청원 문제라든가 이런 각 소위 운영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홍익표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홍익표 위원** 국회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법안통과 실적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또 중요한 법안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도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해 보고 할 때는 단순히 법안을 실적 위주로 계량화하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손금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법안처리에 있어서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어서는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현황이나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에 있어서는 법안심사나 또 처리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법안들에 있어서도 뭐 여야 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양보를 하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정기국회 이전에도 많은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조차도 법사위에서 산업부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법사위 자체에서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안 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앞으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산업부장관의 법사위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안처리 비율로 보면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저희들이 약 6위여서 우선 처리 건수로 보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 법안처리 비율만 가지고, 이렇게 건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꼭 합리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잡을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법안처리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27항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께서 이제 한 2개월 되셨지요, 그렇지요? 얼마 되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 업무를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또 장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소신과 국정철학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가 지난 16일 날 시민참여단을 478명 결정하면서 공론화위원장이 환영사에서 이

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고리 원전 건설 찬반에 관해서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삼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 9월 12일 날 경주에 가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사전에 보도자료로 산업부에서 낸 자료 확인을 다 장관이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검토를…… 제가 봤습니다.

○**곽대훈 위원** 보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곽대훈 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를 했어요, 사전에. 장관이 현장에 가시기 이전에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남권 단층조사 현장방문 시 이 자리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가능하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때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가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또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홍태경 교수가 우리가 진도 7.0 이상의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 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곽대훈 위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까? 그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그런 참여자도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반대 의견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하지 않았습시다. 지질……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은 안 했는데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질연구원 원장께서는 7.0에 대한 게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곽대훈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 방문하고 난 뒤에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 의견도 산업부에서 입장을, 방문 결과를 얘기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애

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

○**곽대훈 위원** 아니, 사실관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질자원연구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간 조사 결과 단기간 내 경주 주변에서 중규모, 규모 4~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경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일본처럼 규모 8~9 정도의 지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기한이 10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9월 16일 날 국민참여단 478명을 임명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관의 발언이나 일방의 주장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보기에는 원전 운영에서의 안전은 최고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대훈 위원**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봤을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있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요.

그리고 지진에 관한 전문성의 입장에는 홍태경 교수가 더 많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곽대훈 위원** 아니 장관,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질자원연구소장은 전문가가 아십니까? 왜 일방의 주장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모든 의견을 거기에 담지 못해서 일어난 거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그건 일견 장관의 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앞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공론화위원장 얘기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지금 현재 한수원하고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관련 자료를 다 삭제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는 안전에 대한 이슈하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곽대훈 위원** 왜 별개입니까? 원전 안전성 위험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참여한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원전 관련 전부 다 삭제하고 비공개 전환하고 지금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유리한 자료만 올려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 이번 문제인 정부가……

○**곽대훈 위원** LNG하고 원전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어느 게 많습니까? 그런 거 왜 거기 게재를 안 해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게……

○**곽대훈 위원** 내 얘기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공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론화위원회가 10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정부가 그런 거 자제하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 공론화위로부터 홍보자료 요청받은 사실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없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공론화위 이윤석 대변인이 7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론화 과정 중 정부의 탈원전 정책 언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산업부가 추진하려 했던 탈원전 관련 홍보활동 등을 공론화가 끝난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7일 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장관 분명히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9월 7일 날 내가 이와 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

니다. 에너지전환·탈원전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산업부에 홍보자료 요청한 유무, 있으면 현황 또 답변한 사본, 다시 확인해서 없으면 없다든지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또 하나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보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9월 7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챙겨 주시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관의 소신과 산업부 정책 운영에 관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뚜렷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직접 요구한 적도 있는데, 7월 31일 당정협의 시 202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2030년까지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제출해 달라, 그런데 차관도 국장도 과장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장관이 주지 말라 그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위원장 장병완 예,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 산업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걸로 제가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주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장관, 지금 탈원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공론화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에 전기요금 관련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그것도 하나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대훈 위원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2022년, 2025년도까지의 전기요금을 가지고 있고요. 2025년부터 2030년도에 대한 전기요금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기요금은 커 나가는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애들이 커 나가면 옷의 크기도 다른 것같이 지금 전기요금도 산업의 균등화 발전원가가 계속 달라지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 커 가는 변수를 재단해 가지고 계산을 확일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30년도의 정확한 전기요금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변수를, 그 변수값을 넣어야지, 산입을 해야지 정확한 전기요금 가격을 산출한다는 게,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 2020년까지 분석을 한 그 자료에도 보면 연료비 변동,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물가 상승 등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곽대훈 위원 이렇게 하셔서 달란 말이지요. 그 분석에 관해서 해석은 제가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 달라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면 그렇게 분석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왜 아직까지 안 내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김도읍 위원님 그다음에 권칠승 위원님, 박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이제 대학교수가 아니시고 대한민국 원전 정책 총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장관이십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원전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60년 가까이 걸리는 나라도 있고 그만큼 원전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는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

공론화위를 운영한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원전 정책 총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장관께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60년 걸려서 논의를 해야 될 이런 중요한 복잡다단한 정책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탈핵이든 탈원전이든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감성적 접근 방법인 지진을 왜 하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60년 걸려서 이야기하고 찬반양론을 펼치고 토론을 해야만 될 걸 왜 하필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꼭 집어서 하느냐 그 지적을 하는데 그게 이해 안 됩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앞으로 60년 동안 계속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정전인 원전의 운영이 최고로 중요한 저희들 과업이고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9월 12일 지진이 난 그날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한수원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더 높일 그런 의무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또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2일 날 경주에 가서 한수원 관계자들 만나서 격려하고 더욱더 안전에 책임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원전의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제조 기술……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그런 걸 꼭 집어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안전이 최고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평온할 때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주무 장관으로서 한수원에게 백번 천번 당부해도 모자람이 없지요, 넘치지 않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그 기사를 보고 ‘이분이 왜 이러실까. 또 상임위에 와 가지고 얼마나 질타를 받으려고 이러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월성 1·2호기를 방문한 이유가, 주목적은 월성 1·2호기의 건식저장소 증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장관을 면담하자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월성 지역 주민들과 만남과 동시에 한 번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먼 거리라서 9월 12일 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안전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KTX 타면 경주 얼마 안 걸립니다. 자주 다니세요, 지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다음은 권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요인으로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위험성의 문제가 같이 포함되는 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할 때 지질조사하고 또 다수호기의 위험성 조사가 부실하거나 혹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 당시에는 지진에 대한 그런……

○권철승 위원 지질조사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진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별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층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이고 심오하게 관측돼……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불리한 자료들을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작년에 이미 상임위에서 다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신고리 5·6호기를 이런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서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

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예를 들면 활동성 단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순간까지 완전히 다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수원의 관계자가 그 연구의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한수원에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미 다 지나갔고 총체적으로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제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위험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짚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경주에서 5.8 강도의 지진이 났을 때 그 이전에 그 정도의 지진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말씀하셨던 분들의 목소리를 아마 찾아보기 거의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건식 임시 저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인데, 산업부에서 이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월성 1·2호기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까지, 맥스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봤을 때 앞으로 2019년 말, 2020년 초까지 포화가 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지에 다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저장 기간이 10만 년입니다. 10만 년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임시 저장을 하고 있고 임시 저장도 2020년도 초 되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원전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역 주민들의 건식저장소 증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고,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그쪽 건식저장소에 대한 제공론화를 통해서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시고 동의를 구하든가 또 바꿀 게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돔형으로 되어 있는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외형 콘크리트 벽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권철승 위원 그것은 전투기가 와서 박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건식저장소는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폭격이나 충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도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훨씬 강도가 떨어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떠한 미사일이 와서 원전 돔을, 발전 돔을 때렸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뭐라고 이야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맥스터의 깊이, 그 콘크리트의 깊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에서 멩커버스터 같은 그런 미사일의 경우에는 지하 수십 미터까지도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참,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원자력 관련자분들하고도, 원자력 전문가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전쟁에 따라서 이런 미사일 무기의 공격에 따른 안전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전 관계 전문가들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사 전문가들이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 이채익 위원, 최연혜 위원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유섭 위원인데, 저희들이 이 전체회의가 종료된 후에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또 간사 회의를 좀 해야 할 저

기가 있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앞의 우리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업부장관이시기 때문에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7번 결의안 촉구안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은 일단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중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박정 위원** 그렇지만 127번은 지금 중단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도 신중을 기하고 중용을 잘하시되 이것을 중단하자는 의견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공론화 과정이 몇 번 있었지요? 2003년도 사패산 터널 공사도 그랬고 2007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왜 실패했다고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게 이해 당사자간의 참여한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 위원** 일견 맞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 시민의 참가가 너무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이미 전문가들이 여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놓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원자력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 왔고요. 그런 결과로 지금 고리 원전이 위치한 지역 3.5km 반경 내에 세계에 유례없게 원전 10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박정 위원** 이렇게 보면, 항상 전문가 위주라 하게 되면 기술이나 경제적 관점에만 치중하고 이게 사회적이거나 윤리적 관점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것도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5·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 결정을 전문가에게 떠맡기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리고 그동안 시민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만큼 이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고 또 정보화의 진전이 있었고, 생활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고, 이렇게 해서 시민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었고 이분들이 자기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식 엘리트 시대 아니고 시민의 시대라는 점에서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결성해서 충분히 찬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백년지대계의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장시간의, 최장 60년간의 이런 공론화 과정을 겪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원전 사고가 빈번해 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공론화를 빨리 해서 그만큼 집중 토론을 함으로써 이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일단 제가 주무 장관으로서 공론화에 대한 중립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론화가 우리나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 또 김도읍 위원님도 지금 공론화 과정 중에 있는데 장관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백운규 장관께서는 즉 학계에 계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내가 대한민국의 산업부장관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발언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장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한쪽 귀로만 자꾸 듣고 그런 논리로 퍼면 정말 갈등만 계속 난다고

요.

산업부장관이, 여기 여야 위원들 모르기는 몰라도 이번 국감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발언 하나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공론화 과정 중에 있는데 계속 발언을, 내가 지금 이 발언록을 전부 다 모아 보면 완전히 신·재생에너지에는 전도사가 되고 원전에는 극도의 불안 내지는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또 10만 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산업부장관이 해야 돼요. 산업부장관이 자꾸 10만 년 말할 게 아니라 산업부장관이면 그런 것을 해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권고안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정부의 로드맵을 만들고…… 어떻게 지금 60년을 얘기를 하면서 장관은 그런 고민은 안 하고 늘 10만 년 그 얘기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향후 사용후핵연료 부분을 산업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일단 이채익 위원님 말씀에, 저는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업무를 아주 엄중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이 자리를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하려고 여러 쪽의 이야기도 제가 겸허하게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만 듣는다는 말씀에 동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법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면……

**○이채익 위원** 백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이채익 위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꼭 남의 말 하듯이…… 그것을 챙겨야 돼요, 꼭 남의 말 하듯이 하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래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채익 위원** 그리고 원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봤어요? 전문가들 의견 한번 들어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이번 경주……

**○이채익 위원**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 봤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경주에 내려갈 때 원전 관계자분도 초청을 했습니다. 전문가,

학계에 계시는……

**○이채익 위원** 원전 전문가 어느 분을 초청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원전학회의 소통 위원장이라는 분을 저희들이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

**○이채익 위원**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상 말을 꼭 남의 말 하듯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여기에 원전 전문가도 같이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연락……

**○이채익 위원** 오늘 일정이,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16일 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10주년 행사에 가셔도 탈원전·탈석탄을 또 얘기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산업부장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지난번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 할 때도 국무총리가 거의 다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석탄화력발전 이것 아홉 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민간 자원에 맡기겠다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내가 또 확인을 해 봤는데 정부가 다 LNG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고. 내가 부지 매입을 언제 했느냐고 한 것에 답변은 안 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허가 났다는 동문서답이나 하고.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산업부장관은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이고 집권 여당의 장관이라고요.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역사에 남는,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갈등이 더 증폭되잖아요.

그리고 공론화,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도 원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료를 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안 냈으면 찬성한 사람의 자료라도 해야 되는데 또 서류를 공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울어진 방식으로 공론화가 10월 21일까지 진행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10월 20일 날 국민적 여론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절대 신뢰에 금이 가는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산업부 에너지 홈페이지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완전 원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재생 쪽으로 도배를 해 놨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결정에 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전부 다 내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입 좀 딱 닫고 좀 진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완 정리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간략하게 답변을 제가……

○위원장 장병완 됐습니다. 다 한꺼번에 들고 나서 나중에 일괄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최연혜 위원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 두 분 법안소위 위원님이시니까 정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 저는 사실 오늘 법안소위 위원이라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제가 몰려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들은 다 시간 제약, 제한을 두고 몇 마디 하면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3배, 4배씩 계속 변명을 하고 있고 한데, 그 변명이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번, 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마다 이런 변명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것 기준에 가지고 있던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한 말씀만 가지고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장관님, 신고리 5·6호기가 무슨 발전소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최연혜 위원 원자력발전소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한 홍보는 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해괴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 자체에서 벌써 장관이 가진 뜻이 무엇

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명백히 국민들은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원전의 안전성을 과도하게 비과학적으로 무리하게 해서 공포를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장관은 더군다나 공학도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과 팩트에 의해서 뭐를 결정해야지 이게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을 막 키워 가지고 과도하게 국가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으로 끌어간다면 그것 또한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똑같이 위험하고 국가에 도움 되지 않는 대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저도 작년에 지진이 났을 때 경주까지 가서 포럼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번 의견이 나왔는데요. 홍 모 교수님은 굉장히 소수의견으로서 그분 한 분만이 ‘진도 8의 지진도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가지고 지질자원연구원장에게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의견, 소수의견만 얘기를 하시고 공적인 자리에서 대다수의 의견을 조율해서 얘기하는 공신력을 가진 지질자원연구원의 원장 말은 얘기를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몹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은 공적인 이 사람 말보다 개인의 소수 몇 명의 교수들 말만 듣고 지금 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은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이 기관을 무시하고……

그러면 공적인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개인 교수들 불러다가 물어봐서 하면 되지 지질연구원을 왜 운영하십니까?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공격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그래요. 미사일 공격이 오면 원전뿐 아니라 뭐든지 다 위험합니다. 대규모 유류 저장고라든지…… 예전에 어떠한 테러 조직에서 우리 철도관제실을 알고 봤더니 비밀리에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태도라든지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 때문에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아까 어떤 말씀 중에 ‘전

문가들에게 맡기면 결과가 뻔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사회적·윤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공감도 표시하시고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은 배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하시고 공정한 처신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장관께서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장관님, 대통령께서 10월 21일까지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은 10월 20일까지 언행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 주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한수원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대국민 원전 안전 홍보, 원전은 안전하다고 지금까지 홍보했어요. 그 홍보물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뒤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진 때문에 원전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은 지진이 있음에도 원전이 있다는 것을 같이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해주세요. 균형감 있게 해 주세요. 10월 20일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까지 이것 내리시겠습니까, 이 페이지? 에너지전환정보센터 10월 20일까지 중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수원에 또 원자력문화재단에 다 삭제해 놓고 이것은 안 할 겁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답변을 일괄해서 하신다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UAE에 원전 수주할 때 전 정부가 총력 지원해서 했습니다. 엇그제인가 사우디의 원전 입찰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수원은 참여하겠지요. 정부가 총력 지원하실 겁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에 있어

서는 세계 제일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해외 수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주하도록 총력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답변 제가……

○**위원장 장병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언론인 들하고 모임도 있어서요 홍의락 위원님하고 김종훈 위원님……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장병완** 홍의락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웬만하면…… 그리고 나서 답변도 들어야 하니까.

○**홍의락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수술이 안전하고 공포심을 가지듯이 똑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전에서 탈원전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는 제가 이해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원전 5·6호기를 얘기할 때 '우리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잘 고려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원전이 있어야 한다고 원전 옹호론자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섭섭하고 자괴감이 있습니다.

어떻든 공론화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주무 부서가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진이 있었을 때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의 안전성 문제를 다시 한번 국론을 조정하면서 평가를 해 보자 그리고 그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부 입장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에너지정책 전반을 평가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우리는 그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될

것인지 그다음에 안전하다면 그대로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우리 나름대로의, 산업부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전을 지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왔지만 다른 대안이 있으면 계속 예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좀 유감입니다.

평소 존경했던 홍의락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원전 옹호론자라고 매도를 해 버린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백운규 장관이 경주 가 가지고 안전성 문제에 집중적으로 기울어진, 경도된 태도를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과정이 오늘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마치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물론 원전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한 편으로는 가정과 산업현장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 대책이 과연 있는지, 그런 대책 수립도 없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원전 중단 결정을 해 버렸고 또 사회에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공론화위원회라는 기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늘 단지 장관의 경주 현장 방문 언행에 대해서 질타하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원전에 대한 입장을 매도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나중에 다음 전체회의 때 위원장께서는 홍의락 위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완** 예, 오늘은 안건 상정에 따른 대체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 당과의 토론을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만을 진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학과 교수들, 한수원 노조, 일부 지역 주민들, 원전 이해당사자들이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9월 6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은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 탈핵을 공약하고 당선되었고 또 이것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겨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현재 진행형인 것 맞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김종훈 위원** 선거라는 것이 그냥 개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이행이고 또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수단인데 오히려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에 온 것도 솔직히 잘못됐다, 일부 국민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 걱정하고 또 이것이 에너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저는 오히려 어쨌든 간에 산자부의 역할이나 이런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객관적이라는 게 어떤 것……

누구의 정부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객관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위주로 되는 것은 큰 문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원 노조원들은 고용 문제를 가지고만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보상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넘어서 탈핵이라는 큰 안을 가지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보면 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정부의 책임과 산자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한수원 직원들 고용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고용을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도 내놓아야 될 것이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민들의 높이에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고 논의될 부분들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러한 토론의 중심을 이해당사자 중심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산자부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산업부는 에너지, 원전의……

○**위원장 장병완** 잠깐 중단하십시오. 김종훈 위원님마저도 다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조배숙 위원님.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간단하게……

○**위원장 장병완** 지금 각 당 저기 했는데 국민의당은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듣고 종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까 손금주 위원 했는데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려고……

○**위원장 장병완** 우선 하여간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조배숙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완**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배숙 위원** 지금 공론화위원회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요. 공론화위원회를 왜 발족을 하고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만약에 탈원전에 대해서 지금…… 정부라는 것은 밀어붙이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그 기초 자체가 공정하게 듣고서 결정하겠다,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공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지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사실 산자부는 주무 부서입니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잘 하셔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야 나중에 결론이 나와도 승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서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장관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처신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완** 송기현 위원님 간략히 좀 해주십시오.

○**송기현 위원** 장관님,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고리 5·6호기에 관련된 중단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하고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데 이렇게 혼동이 되는 데는 장관님이나 산업부의 설명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점차 원전 발전을 줄이고 또 다른 쪽으로 간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우리 전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기 수급이나 또 기존의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고리 5·6호기는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긴 과정에서의 탈원전 또는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할지 말지를 논의한다는 것이지 탈원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 자체를 공론화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원전은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혼동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인 에너지전환정책과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혼동이 돼서,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자꾸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병완** 모든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관 답변하실 시간인데, 지금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전의 안전성과 또는 찬반이 있는 문제의 결론을 바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만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약 한 달도 채 못 남았는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제시될 때까지 찬반 의견을 동등하게 보장하거나 아니면 동등하게 다 또 별도의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고 정부 차원에서는 여타 공정성이 의심되는 어떤 발언이라거나 이런 것을 동시에 중단하거나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또 다른 사실은 우리 사회적인 불신의 출발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공정성이 의심되는 그러한 조치들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 겸허히 경청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여러 의견들 중에서 저희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중립성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에 대한 감축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신산업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5년도 IEA 보고서를 보시면 얼마만큼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IEA에서 OECD 국가에서 전체적인 발전설비의 투자에 있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입니다. 그만큼 그쪽에 대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고 신·재생에너지가 9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에 에너지산업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에 대한 중립성은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유섭 위원님 지적하신 UAE 같이 사우디도 저희 산업부가 원전의 수출에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 수출하게 되면 전반적인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이익이 나는, 국익이 나는 곳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해 받지 않도록 항상 제가 처신을 공정하게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가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장관한테 홈페이지 내리는 부분을 질문했잖아요. 왜 그것 답변 안 하세요?

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일단 내리는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홈페이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야 되는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업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홍보해야 될 그런 의무는 당연히 산업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혹시 공정성에 만약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 위원** 저는 에너지 전환 그 자체가……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 자체가 신·재생 쪽으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20일까지는 그것도 일단 내리고 10월 20일 이후에 올리든지, 10월 20일까지는 내리는 게 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것 오늘 답변해야 결론이 납니다.

○**위원장 장병완**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마지막 안건 처리를 해야 하니까 저기 해 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해 말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경제성 이외에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급전 원칙으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자체에는 다 동의를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해 주시고, 아까 장관도 홈페이지 중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리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122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 및 1건의 결의안은 법률안소위와 청원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8조제4항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님과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된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곽대훈	권칠승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병관	김수민	김중훈
박정	손금주	송기현	여기구
유동수	이찬열	이채익	이훈
장병완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조배숙	최연혜	홍의락	홍익표

**○청가 위원(2인)**

김정훈 박재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전문위원	이용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차관	이인호
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정책기획관	윤갑석
산업정책실장직무대리	원동진
산업기술정책관	박건수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중견기업정책관	이동욱
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무역정책관	박진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보고사항】**

**○의안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7. 9. 8. 김수민 · 이동섭 · 박준영 · 이연주 · 김삼화 · 권칠승 · 신용현 · 김경진 · 최도자 · 채이배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8. 곽대훈 · 김도읍 · 이정현 · 김정재 · 정태욱 · 이철우 · 이채익 · 장석춘 · 최연혜 · 곽상도 · 김명연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8. 곽대훈 · 김정재 · 정태욱 · 윤재욱 · 이철우 · 이채익 · 김도읍 · 최연혜 · 이종명 · 곽상도 · 김명연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1일 회부됨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박홍근 · 신경민 · 안규백 · 변재일 · 정재호 · 박재호 · 이원욱 · 전현희 · 이해찬 · 추미애 · 이종걸 · 설훈 의원 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박홍근 · 신경민 · 안규백 · 변재일 · 정재호 · 박재호 · 이원욱 · 전현희 · 이해찬 · 추미애 · 이종걸 · 설훈 의원 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박홍근 · 신경민 · 안규백 · 변재일 · 정재호 · 박재호 · 이원욱 · 전현희 · 이해찬 · 추미애 · 이종걸 · 설훈 의원 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1. 박홍근 · 신경민 · 안규백 · 변재일 · 정재호 · 박재호 · 이원욱 · 전현희 · 이해찬 · 추미애 · 이종걸 · 설훈 의원 발의)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발의)

(2017. 9. 11. 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  
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  
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1. 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  
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  
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2일 회부됨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  
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  
김종희 의원 발의)

9월 13일 회부됨